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03

발의연월일: 2022. 6. 23.

발 의 자:이양수・박대수・박 진

서병수 · 안병길 · 윤상현

유재갑 • 유창혁 • 조명희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입법 불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 및 제4항의"로 한다.

④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외선거인등은 선거일 전 8일부터 1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선거인의 국내 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법) ①・② (생 략) 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 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 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 -----말한다. 이하 이 조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에서 같다----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 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여 국 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외선거인등은 선거일 전 8일부터 1일까지 주소지 또 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는 선거인의 재외투표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